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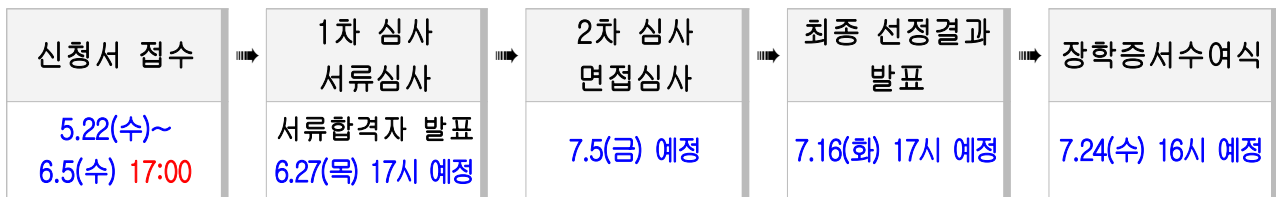
2019년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

지원대상	지원항목	지원기간	지원방법
대학 학부생	학업장려금 * 타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(단, 교환학생 지원 목적의 교외장학금 제외)	2019년 2학기	온라인 등록 후 서류 등기우편 제출

서울장학재단은 세계 각국 대학생과 함께 학문을 넓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적인 미래 글로벌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.

□ 사업개요

1. 사업명 : 서울교환학생장학금
2. 선발인원 : 총 50명
3. 지원금액 : 아시아¹⁾ 300만원, 유럽·미주 등 기타 400만원
4. 지급시기 : 2회 분할 지급 (8월 200만원/270만원, 12월 100/130만원 지급)
5. 지원성격 : 학업장려금
6. 선발절차 : 단계별 선정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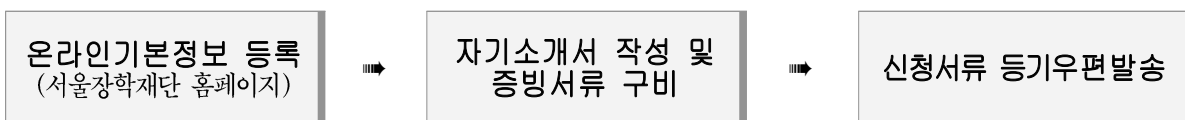


※ 선발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'장학사업 소식' 게시판을 통해 안내함

□ 장학금 신청 ★ 참고자료 1. '자주하는 질문' 확인할 것

1. 신청기간
 - 가. 온라인 신청기간 : '19. 5. 22(수) ~ 6. 5(수) 17:00까지
 - 나. 우편접수 마감기간: 6. 5(수) 마감일 등기우편 소인분(우체국 발송)까지

2. 신청절차 ★ 온라인과 우편접수 모두 완료해야 심사대상으로 확정됨



- ▶ 발송처 : (04130)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, 2층(공덕동,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)
서울교환학생장학금 담당자 앞

1) http://stat.kita.net/kts/pum/textopia/gikt9540d.jsp?global_cd=A00 한국무역협회 대륙기준 참고

3. 신청자격 (가~바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)

- 가. **대한민국 국적자**로서 고등교육법상 설립된 **서울 소재²⁾ 대학교 학부생**
(현재소속대학에서 이수한 학기가 없는 신입생, 편입생 지원불가)
- 나. 소속 대학의 **가을학기** 본교 파견 **교환학생** ³⁾ 프로그램 파견(예정)자 (기파견자 지원불가)
- 다. **전체 학년** 백점 환산 성적 총 평균 **85점** 이상⁴⁾
- 라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18년 2학기 또는 19년 1학기 소득0~4분위⁵⁾
- 마. 증서수여식(7/24) 참여 및 글로벌 특파원 활동이 가능하고 후배기수 멘토링 참여가능자
- 바. 교환학생 지원 목적의 국내 교외장학금 수혜자지원 불가 (그 외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)

4. 제출서류 : ① ~ ⑦ 필수 제출임 (⑧은 해당자만 제출)

제출서류		발급처	비고	
① 신청자 체크리스트 ② 온라인 기본정보 신청서 (온라인) 출력본		재단 홈페이지 www.hissf.or.kr	1부	
③ 자기소개서			4부씩	
④ 교환학생 파견확인서 재단 지정서식에 따라 대학 교환학생 담당 부서 담당자 확인			1부	
⑤ 재학증명서 (휴학생 : 재적(휴학)증명서) ⑥ 성적증명서 (전체 학년 100점 환산 성적으로 제출)		소속 학교	원본 1부 ※발급일 인정기준 :19.2.22 이후 *참고 7-④, ⑧ 서류는 부모 혹은 배우자 명의로도 제출 가능	
⑦ 가정환경 증빙서류 (A~C 중 택 1)	① 기초생활 수급자	수급자증명서 : 생계, 의료, 보장시설 수급자		주민센터 방문 혹은 민원24홈페이지 www.minwon.go.kr
	② 법정 차상위계층 (택1)	수급자증명서 : 생계, 의료, 보장시설 비수급자 자활근로자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장애인연금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		
	③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 (0~4분위)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		국민건강보험공단 minwon.nhis.or.kr
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 : 본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신청학기, 소득구간(분위), 소득분위 통지일자 표기 필수 ※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8년 2학기과 19년 1학기 소득분위 중 0~4분위 기준만 적용 (소득분위 통지일자 인정기간 신청마감일(19.6.5(수) 이전)		한국장학재단 www.kosaf.go.kr ▶장학금 ▶증명서 발급 ▶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 발급		
⑧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	④, ⑧ 서류제출자 중 부모 혹은 배우자 명의로 제출 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로 제출 미혼 : 부모 명의 발급 기혼 : 배우자 명의 발급	주민센터 방문 혹은 민원24홈페이지 www.minwon.go.kr		

2) 서울 소재지 기준 : “서울”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(캠퍼스 단위 적용, 원격대학 제외), 지원가능 대학교명단 확인
 3) 교환학생 기준 : [모두 충족] ①모교 선발 ②19-2학기 모교 재학 등록 ③파견교 이수학점 모교 인정 ④파견교 정규학기 3개월 이상 참여 (지원불가 : 인턴십 참여, 어학당/어학코스만 이수, 교환학생 기파견자)
 4) 성적 기준 : 매 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일 필요는 없음
 5) 소득분위 기준 : 18년 2학기 혹은 19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보유자에 한함

1. 증빙서류
 - 서류발급일 : **2019년 2월 22일 이후** (19년 2월 22일 이전 서류 제출 불가)
 - ※ 발급서류에 표기되는 **주민등록번호 뒷자리(7자리)는 비공개처리**
 - ※ 가구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복 대상자는 수급자(우대) 서류만 제출할 것
 - 가족관계증명서 : 신청인과 서류 명의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용도
 - ※ 가족인정범위 (미혼신청자 : 부모/ 기혼신청자 : 배우자)
2. 신청서 수정·삭제하기 : 우편 제출 전까지 수정 가능
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hissf.or.kr) → 마이페이지 → 내 장학금 신청현황 → 장학금 신청목록
 → 신청 '장학금명' 클릭 후 신청서 하단의 '수정', '삭제'버튼 이용

5. 제출시 유의사항

- 가. 학교, 생년월일, 학번, 휴대전화번호, 비상연락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.
- 다.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합니다.

□ 장학금 지급

1. 지원기간 : 1개 학기 (2019년 2학기)
2. 지급방법 : 소속 대학교 지급 (소속 대학교를 통해 장학금 수령함)
3. 지급시기 : 장학증서 수여식 후 1회, 11월 최종보고서 작성 후 1회
4. 장학금 지급 결격사유 :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소속 대학으로 반납
 - 가.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업 미수행 (휴학, 제적, 자퇴, 졸업 등)
 - 나. 19년 2학기 교환학생 미파견(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)
 - 다. 교환학생 지원 명목의 교외장학금 수혜가 확정된 경우 이중지원 불가
 - 라. 장학생 의무사항에 대한 불성실 이행
 - 마. 기타 허위 사실,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학생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

□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

1. 장학증서수여식 : **7월 24일 (수) 16:00** ※ 무단 불참시 장학생 합격 취소 (필요시 참석확인서 발급함)
2. 장학생 활동
 - 보고서 제출 : 교환학생 준비 및 교환학생 파견 수학 내용 보고서 제출 2건
 - 글로벌 특파원 활동 : 교환학생 활동내역 SNS 및 개인 블로그 공유
3. 후배 기수 멘토링 활동
 - 활동 종료 후 다음 기수 멘토링 가능자 (다음 기수 증서수여식 참석)
4. 그외사항 : 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 (1회)
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

□ 신청문의

- ☎ inej@hissf.or.kr ☎ 02-725-2257, 070-8667-3996 (문의시간 : 평일 09:00~12:00, 13:00~18:00)
- 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참고자료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주시고, 추가문의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공휴일제외 1일 이내 회신)

[참고자료 1] 자주하는 질문

장학금 신청

Q1 장학금 신청을 위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- A1 • **지 역** :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지역 내에서 고등교육법상 설립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대학 **학부생** (신청인의 거주지역 제한없음, 원격대학, 2년 이하의 각종학교, 평생교육법상 설립한 학교, 대학원생 제외, 신청가능 대학리스트 필수 확인)
- **학 년** : 2019년 2학기 본교 재학(예정)자
 - ※ 19년 1학기 휴학생 신청 가능하나 신입생/편입생(신청일 기준 첫 학기생)은 신청 불가
 - **성 적** : 전체 학년 평균 평점 **85점 이상** (각 학기 평점이 85점 이상일 필요 없음)
 - **파견기간** : 19년 가을학기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된 학생 (기존 파견자는 제외)
 - **소득기준**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득 0~4분위(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)
 - **기 타** : 선발 후 장학증서수여식과 장학생 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

Q2 장학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

- A2 • 1단계 : 온라인 접수 및 접수 내역 출력 -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**[장학금 안내]** > **[대학생 장학금]** > **[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생장학금]** > **[장학금 신청]** 클릭,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이 기재된 해당페이지를 인쇄하여 표지로 제출
- *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
 - 2단계 : 서류 구비 - 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수량대로 구비
 - 3단계 : 등기우편 발송 - 재단에 일괄 등기 우편 발송 (마감일 발송분까지만 인정)

Q3 온라인 접수 내역을 어디에서 출력하나요?

- A3 • 서울장학재단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장학금 신청목록 > 2019년도 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생장학금 - 접수번호 클릭 - 화면 하단의 **[인쇄]** 버튼 클릭하여 출력

Q4 성적증명서에 전체학기 백분위(백분율)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

- A4 • 대학 학적과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,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점수, 담당자 확인, 담당자 성명, 담당자 연락처를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해주세요.

Q5 장학금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A5 • 장학금을 신청 가능한 경제적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과 소득 4분위 이하입니다. ('참고자료 2. 소득서류 구비방법' 참조)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2019.2.22.이후 발급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의 2018년 2학기 또는 2019년 1학기 확정된 소득 0~4분위로 본인의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그 외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 일체 반영되지 않습니다.

Q6 교환학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A6 신청인의 **대학에서 파견하는 교환학생**으로 선발이 확정된 학생으로, 해외의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**학점을 본교에서 인정**받아야 합니다.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- ①모교 선발 ②19-2학기 모교 재학 등록 ③파견교 이수학점 모교 인정 ④파견교 정규학기 3개월 이상 참여
(비인정 : 인턴십 참여, 어학당/어학코스만 이수, 교환학생 기파견자)

Q7 장학금 지원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?

A7 • 본 장학금은 학업장려금으로 지원됩니다.

- 다만,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국내 대학생들이 고르게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**교환학생을 지원하는 동일 명목의 국내 교외 장학금의 중복 지원은 제한**합니다.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모교, 파견교, 파견국가정부 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.

Q8 신청서류 구비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A8 • 자기소개서 : 최대 3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작성

- 온라인 기본정보 신청서 : 재단 홈페이지에서 **온라인 신청서**에 기본정보 작성 후 출력
- 재학증명서(휴학생 : 재적(휴학)증명서)
- 성적증명서 : **전체 학년 100점 환산 점수**가 기입된 증명서 제출(편입생 : 현 소속 대학교 성적표만 제출)
- 가정환경 관련 서류 : 참고자료 2에 상세 안내
- 가족관계증명서 : 부, 모 명의로 발급 (단, 기혼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)
- **교환학생 파견확인서** : 교내 교환학생 파견 담당부서 요청 후 제출
- 모든 증빙서류는 **19년 2월 22일 이후** 발급 서류만 인정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수정, 반환이 불가하므로 제출 시 유의할 것

Q9 장학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?

A9 • 서류심사 : 글로벌리더십, 미래성장가능성, 가정환경, 성적

- 면접심사 : 글로벌리더십, 미래성장가능성, 인성 및 태도

장학금 선발결과

Q7 장학생 선발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A7 서류심사결과 발표는 6월 27일(목), 면접은 7월 5일(금) 진행됩니다. 최종선정결과는 7월 16일(화) 오후 17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입니다. 각 단계별 심사결과는 재단 홈페이지(장학사업 소식 및 마이페이지)를 통해 선발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개별 안내합니다. 부득한 사유로 심사 및 발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.

Q8 장학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A8 • 지원기간 : 1개 학기 장학금 지원(19년 2학기)

- 지급방법 : 소속 대학 일괄 입금(재단) → 개인 계좌 입금(대학)
- 지급횟수 : 장학증서 수여식 후 1회, 12월 최종보고서 작성 후 1회
- 지급결격 : 교환학생 대상 교외 장학금 중복 수혜 또는 장학생 활동 불성실, 교환학생 미파견 등의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- 반납방법 : 반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소속 대학의 장학부서와 반납절차 상의

Q9 장학생이 참여해야할 활동은 무엇인가요?

A9 장학증서수여식은 장학생 전원 참가해야 하며 무단 불참시 장학생 선정이 취소됩니다. 파견 전 교환학생 준비에 관한 내용과 파견기간 중 글로벌 특파원으로서 해외 교환학생 현지 소식을 보고서 형식으로 2회 이상 작성하고 SNS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. 또한 후배기수를 위한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장학증서수여식에서 안내해드립니다.

[참고자료 2] 소득서류 구비방법
□ 소득증빙서류

- 공고문에 제시한 소득증빙서류는 지원자격을 확인 가능한 서류 1가지만 제출 (㉠, ㉡, ㉢ 중 택 1)

서류 종류	발급처	유의사항
기초생활수급자 ㉠ ◦ 수급자증명서 : 생계, 의료, 보장시설 수급자 (예시) 생계급여, 의료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 항목에 1개 이상 [V]표 4. 수급자구분: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생계급여 일반수급자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의료급여 수급자 [<input type="checkbox"/>]주거급여 수급자 [<input type="checkbox"/>]교육급여 수급자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보장시설 수급자	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.ninwon.go.kr	부모(미혼), 배우자(기혼) 명의 서류 제출자 :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(가족관계 확인)
차상위계층 ㉡ ◦ 수급자증명서 : 생계, 의료, 보장시설 비수급자 (예시)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항목에만 [V]표 4. 수급자구분: [<input type="checkbox"/>]생계급여 일반수급자 [<input type="checkbox"/>]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[<input type="checkbox"/>]의료급여 수급자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주거급여 수급자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교육급여 수급자 [<input type="checkbox"/>]보장시설 수급자 ◦ 자활근로자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장애인연금(경증)장애수당·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◦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		
소득분위 신청자 (0~4분위) ㉢ ◦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 : 본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신청학기, 소득구간(분위), 소득분위 통지일자 표기 필수 ※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8년 2학기 혹은 19년 1학기 소득분위 (소득분위 통지일자: 신청마감일(19. 6.5) 이전)	한국장학재단 www.kosaf.go.kr ▶ 장학금 ▶ 증명서 발급 ▶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 발급	소득분위는 본인의 정보만 인정
비고 소득증빙서류 ㉠, ㉡, ㉢ 외 일체 제출 불가 [미인정서류]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증명, 건강보험료, 소득 5분위 이상, 발급일자 미확인 서류 등		

□ 제출시 유의사항(공통)

- 서류발급 유효기간
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19.2.22. 이후 발급
 - 소득분위 신청학기 : 2018년 2학기 혹은 2019년 1학기 확정 소득분위 (신청마감일(19.6.5) 이전 확정 분만 가능)
- 제출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우편 제출 ※ 팩스, 이메일, 직접 방문 제출 불가
-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

1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가. 관련서류 : 공고문(2페이지) 참조

나. 구비내용

- 증빙자료를 통해 학생 본인 또는 대상자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될 것
- 가족관계증명서 : 신청인 명의가 아닌 경우 가족 확인용
 - ※ 부모(기혼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)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
- 가족인정범위 :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록된 가구원 중 부모 (기혼자 : 배우자, 본인)
- 가구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복 대상자(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)는 기초생활수급자 서류만 제출할 것

다. 발급방법

- 서류발급 인정일 : **2019. 2. 22 이후** 발급 서류만 인정
- 발급처 :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[민원 24 (www.minwon.go.kr)]
 - ※ 단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사이트(minwon.nhis.or.kr)에서 발급
- 유의사항 : 개인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도록 발급